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소방청 (화재대응조사과)
연 월 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·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·통제에 따르도록 하며,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·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소방기본법」이 개정·공포(‘22.11.15.)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설함
(안 제8조의5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5(자체소방대의 교육·훈련 등의 지원)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
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·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소방공무원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와 같은 조 제2항에
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 운영
2. 자체소방대 교육·훈련 계획의 검토·지도
3.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
4.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 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
5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5(자체소방대의 교육·훈련 등의 지원)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·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「소방공무원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 운영</u> <u>2. 자체소방대 교육·훈련 계획의 검토·지도</u> <u>3.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</u> <u>4.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</u> <u>5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